

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제출년월일 : 2015.11.18.

의안 번호	2736
----------	------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

□ 제안이유

- 2016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이전 · 말소 등록전 자동차세 신고납부가 의무화 됨에 따라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,
- 법제처 선정 조례 규제개선 과제 정비 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지방세 체납 처분 중지 공고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납세자가 체납처분 중지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가.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5조의2제1항 신설)
- 나.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대행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고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함. (안 제5조의2제2항 신설)
- 다. 체납처분에 관한 「국세징수법」 준용에 따라 체납처분 중지에 대한 공고 기간을 연장(10일 ⇒ 1개월)하여 주민의 알 권리 보장 (안 제39조)

3. 개정조례안 : 불임 1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불임 2
5. 관계법령발췌서 : 불임 3

6.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7. 예산수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8. 사전예고 : 의견있음(불임 4)

○ 입법예고 : 2015. 10. 2. ~ 2015. 10. 23.(20일간)

9. 기타 참고사항 : 불임

○ 현행조례(전문) : 불임 5

○ 방침결정문 : 불임 6

< 불임 1 >

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자동차 이전·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에 관한 특례)

- ① 「자동차등록령」 제5조제2항에 따라 시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등록 사무를 시 관할 이외 지역의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「지방세법」 제128조 및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125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록 사무를 처리하는 다른 등록관청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.
- ② 시장은 「자동차등록령」 제5조제2항에 따라 시 관할 이외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신고서류를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.

제39조제3항 중 “10일간”을 “1개월간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세 정 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세정과장 하 순 자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세정담당 이 종 민
	담당자 성명·전화	이 상 철 (행정 2198)

< 불임 2 >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〈신 설〉</u></p> <p>제39조(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) ① ~ ② (생 략)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에는 일간신문·공보에 게재하거나 시·구 게시판에 <u>10일</u>간 공고하여야 한다. ④ (생 략)</p>	<p>제5조의 2(자동차 이전·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) ① 「자동차등록령」 제5조제2항에 따라 시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시 관할 이외 지역의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「지방세법」 제128조 및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125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다른 등록관청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.</p> <p>② 시장은 「자동차등록령」 제5조제2항에 따라 시 관할 이외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신고 서류를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.</p>
<p>제39조(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<u>1개월</u> 간 -----. ④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39조(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<u>1개월</u> 간 -----.</p>

안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2736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15. 12. 10.
제 안 자 : 기획행정위원장

수정이유

- 용어의 표현을 명확히 하여 혼동을 최소화 하고자 함.

주요골자

- “안산시”를 “시”로 약칭 표현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5조의2제1항)
- 다른 등록관청 및 수탁에 관한 표현을 명확히 함.(안 제15조의2
제1항, 제2항)

안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**안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
수정한다.**

안 제5조의2제1항 중 “시”를 “안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”로 하고, “다른 등록관청에 위탁하여”를 “해당 등록관청에 위탁하여”로 한다.

안 제5조의2제2항 중 “주택 받아”를 “주택하여”로 한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